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군인연금법상 사병복무기간 가산〉

■ 안규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84호)

2024. 11.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4
1. 사병복무기간 산입제도의 도입배경 및 제정안의 입법취지	4
2. 제정안의 심사 시 고려할 사항	7
3. 사병복무기간 산입 관련 법률안 심사 연혁	10
※ 참고자료	12
1. 사병복무기간 산입 관련 3개 연금법 개정 현황	12
2. 사병복무기간 산입규정 관련 3개 연금법의 경과조치 규정	12
3. 사병복무기간 가산 적용대상 인원 및 재정소요 추계	1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안규백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0. 2.
3. 회부연월일 : 2024. 10.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 「군인연금법」은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을 1984년 10월 1일 이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하여만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있음. 그래서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은 연금 등의 지급에 있어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약 3년)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1일 차이 등으로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에 대하여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정부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2025년 1월 1일 이후(법이 통과된 다음년도 1월 1일)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만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다른 군인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참전의 공과 애국정신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군인연금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등의 복무기간을 산입 받지 못한 참전군인으로 함(안 제3조).

나. 이 법에 따른 대상자 결정, 직업군인 복무기간 산정 및 연금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1984년 9월30일이전퇴직참전군인연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조).

다. 복무기간의 산입 등은 1983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3587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제16조제5항 및 부칙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병 복무기간을 「군인연금법」의 복무기간에 산입함(안 제5조제1항).

라. 사병복무기간의 산입으로 인한 퇴역연금·유족연금 등 연금의 지급은 이미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는 소급하지 아니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만 적용함(안 제5조제2항).

마.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서 이 법에 따른 연금지급 및 연금금액 추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연금지급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위원회는 연금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하며, 위원회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연금은 이를 환수하도록 하고, 연금 지급을 받은 자가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을 지급받게 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

Ⅲ. 검토의견

1. 사병복무기간 산입제도의 도입배경 및 제정안의 입법취지

□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등은 공무원 임용 전 사병복무기간은 공무원 연금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반면,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입대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 1/2 기간을 공무원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여 주는 등 동일한 사병복무기간에 대하여 임용 전후를 기준으로 차별이 존재하였음.

이에 1982년 12월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개의 연금법을 개정하여 사병으로 복무한 기간을 군인,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제도상의 문제를 해소하였음.

□ 1982년 12월 개정 당시 「군인연금법」은 사병복무기간 산입규정의 시행일을 「군인연금법시행령」으로 위임하였고, 해당 시행령은 그 시행일을 1984년 10월 1일¹⁾로 정하였으나, 부칙에 경과조치를 둬으로써 사병복무 산입규정 시행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하여는 사병복무기간 산입조항 적용을 배제하였음.²⁾

1) 군인의 경우 장교, 준사관, 하사관, 병 등 계급과 지위가 달라 사병복무기간을 군인 복무기간에 합산하기 위해서는 각 계급별 복무기간 환산률 등의 마련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였음.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1984. 11. 8 대통령령 제11542호)

②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3587호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 개정법률 제16조제5항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3개의 연금법은 모두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둬으로써 사병복무기간 산입규정 시행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하여는 사병복무기간 산입조항 적용을 배제하였음.

참고자료 2. 사병복무기간 산입규정 관련 3개 연금법의 경과조치 규정 참조

「군인연금법」 부칙(1982년 12월 28일 법률 제3587호)

①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5항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군인보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의 초임호봉 부여에 있어 장교·준사관·하사관·병 등의 모든 계급간의 복무기간을 합산·조정하는 제도가 마련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군인연금법」의 개정(1982년 12월 개정)으로 사병복무기간 합산인정 조항은 신설되었으나, 그 시행 전인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역한 사람은 사병복무기간을 합산하지 못하여 퇴역연금급여 등에 있어서 여전히 차별을 받게 됨에 따라,

제정안은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역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병복무기간을 소급·합산하여, 그 산입에 따라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이 된 사람은 신규 수급권자로 연금을 지급하고, 이미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늘어난 기간만큼 연금을 추가하여 지급함으로써 다른 군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임.

- 제정안은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에 대하여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기 위하여 총 17개 조문의 본칙과 1개 조문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조문 구성]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자)
제4조(연금지급심의위원회)
제5조(복무기간의 산입 등)
제6조(연금지급 신청)
제7조(지급결정)
제8조(결정서의 송달)
제9조(재심의)
제10조(신청인의 동의와 연금지급)
제11조(연금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제12조(소급기여금의 면제)
제13조(연금지급의 환수)
제14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15조(소멸시효)
제16조(이 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
제17조(벌칙)
<부 칙>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제정안의 심사 시 고려할 사항

□ 제정안은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역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병복무기간을 소급·합산함으로써 다른 군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으나, 제정안의 심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첫째, 「군인연금법」은 수급권자가 복무 당시 기여한 금전 및 그 납부 기간에 비례하는 퇴역연금 등의 금전을 퇴역 후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재직기간 산입은 법 개정 당시 복무 중인 사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므로 퇴역하여 퇴직일시금·퇴직연금 등을 수령하고 신분 및 급여 등 법률관계가 이미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재직기간 산입을 소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급에 따라 발생하는 이들의 이익과 소급적용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안정성 저해 문제 등을 비교형량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 둘째, 제정안은 사병복무기간을 합산하지 못하고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은 그 이후에 퇴직한 군인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취급을 받았다는 입장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음.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폐해를 예상하고 그 폐해를 최소화

하고자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은 규정을 둔 것이므로, 경과조치 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³⁾

- 셋째, 사병복무기간을 합산하여도 복무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하는 참전군인을 특별법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자인 연금수급권자만을 고려한 차별적 입법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동 법률안과 같이 적용대상을 참전군인으로 한정하는 경우, 사병복무기간은 있으나 참전 경력이 없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참전자는 참전자와 동일하게 의무복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음.

- 개정안에 대하여 국방부는 ① 사병복무기간 합산규정은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등 3개 공적연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개정안이 통과되어 군인연금에 대한 법률관계가 종결된 사람의 사병복무기간이 소급·인정된다면, 사병복무기간 합산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던 퇴직공무원등의 소급입법요구도 예상되어 공적연금제도의 혼란이 우려될 수 있으며,

3) 2013 헌바17, 2011헌바 169, 2012헌가4, 2000헌바69

판례 결정요지: 개정 군인연금법이 복무기간 산입제도를 도입할 당시 입법자는 군인의 경우에도 현역병 등으로 복무한 기간을 군인으로서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주는 것이 일반 국민의 정서와 맞고, (중 략) 그런데 위 제도를 이미 퇴직한 군인들에게도 소급적용할 경우 국가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되고 이미 확정된 연금수급관계 등의 법률관계를 번복하게 되어 많은 혼란이 생길 수 있게 된다. 이에 입법자는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폐해를 예상하고 그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둔 것이므로, 이 사건 경과조치조항이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연금수급권의 형성은 기여금의 납부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동법률안과 같이 이를 면제하는 것⁴⁾은 정상적인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③ 법 통과 시 향후 5년간 898억원의 추가예산 소요가 예상되어 군인연금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입장임.

4) 안 제12조(소급기여금의 면제) ① 이 법 시행에 따라 복무기간이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 중의 연금 미 수령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산입기간 중의 미납 기여금과 퇴직 당시 수령한 일시 퇴직금을 국고에 상환할 의무를 면제받는다.

② 소급기여금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병복무기간 산입 관련 법률안 심사 연혁

□ 1984년 9월 30일 이전 퇴직군인에 대한 사병복무기간 산입과 관련하여, 제16대 국회에서 조웅규 의원이 대표발의(2002. 10. 24.)한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 이후 제21대 국회까지 총 8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음.

이들 법률안은 소급입법에 따른 법적 안정성 저해,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재정부담 과중 등의 사유로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표 1] 사병복무기간 산입 관련 법률안 심사 연혁

대수	법안	대표발의	제안일	심사결과	비고
제16대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	조웅규 의원	2002.10.24.	임기만료 폐기	
제17대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김성곤 의원	2005.5.11.	폐기	참전자 한정
제17대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임종인 의원	2006.3.16.	폐기	참전자 한정
제18대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퇴직군인의 연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공성진 의원	2008.9.16.	임기만료 폐기	
제19대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퇴직군인의 연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정미경 의원	2015.3.24.	임기만료 폐기	
제20대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퇴직군인의 연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안규백 의원	2016.8.30.	임기만료 폐기	
제20대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안규백 의원	2019.4.19.	임기만료 폐기	참전자 한정
제21대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안규백 의원	2020. 7.31.	임기만료 폐기	참전자 한정

자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

문 의 처
02)6788-5304

※ 참고자료

1. 사병복무기간 산입 관련 3개 연금법 개정 현황

구 분	조 문	시행일
군인연금법 [법률 제3587호, 1982.12.28., 일부개정]	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 (방위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1984.10.1
공무원연금법 [법률 제3586호, 1982.12.28., 전부개정]	제23조(재직기간의 계산) 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 (방위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983.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3582호, 1982.12.27., 일부개정]	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 ②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 (방위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자의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임기기간에 산입한다.	1983.1.1.

2. 사병복무기간 산입규정 관련 3개 연금법의 경과조치 규정

구 분	조 문
군인연금법 [법률 제3587호, 1982.12.28., 일부개정]	부칙 ②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군복무기간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후 시행되는 제16조제5항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시행당시 복무중인 군인으로서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월부터 매월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군인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공무원연금법 [법률 제3586호, 1982.12.28., 전부개정]	부칙 제5조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제8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3582호, 1982.12.27., 일부개정]	부칙 ③(재직기간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제32조의 개정규정에 해당되어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산할 수 있다.

3. 사병복무기간 가산 적용대상 인원 및 재정소요 추계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연 도		'25	'26	'27	'28	'29	합 계	연평균
기존수급자 연금액	인원	4,784	4,648	4,505	4,357	4,206	-	4,500
	금액	11,907	11,612	11,302	10,990	10,678	56,489	11,298
신규수급자 연금액	인원	341	337	331	323	314	-	329
	금액	7,243	6,948	6,664	6,379	6,118	33,352	6,670
합 계	인원	5,125	4,985	4,836	4,680	4,520	-	4,829
	금액	19,150	18,560	17,966	17,369	16,796	89,841	17,968